

2023년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7.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74건(안건번호 제2023-91827호~9440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91827호~91828호(순번 1번~2번)는 카페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1829호~91848호(순번 3번~22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91849호~91850호(순번 23번~24번)는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91851호~91853호(순번 25번~27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91854호~94400호(순번 28번~2574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4,18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74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6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27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25건임.

동일한 카페에 동일 게시자가 게시한 방송물로,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49화까지 전체분량을 카페에 게시하였고, 민원인은 이중 25개 게시물을 보호원에 신고함.

해당 저작물은 현재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판매중인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번을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 내지 2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41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 내지 22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10번을 보여주기 바람. 가격이 이전 게시물들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기의 판매가 맞는지?
- 김선화 선임: UBOX, EV BOX라는 용어를 피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시물의 대표 가격은 저렴해 보이지만, 옵션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선택하면 이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B 위원: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가결에 동의함.
- C 위원: 해당 게시물은 ●●● ●●●●●●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다른 ★★ 및 ●●●●에서 판매하는 것도 ○○○○ 페이지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 페이지 적용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것은 입점하거나 제휴를 맺을 때 OSP에서 불법 정보가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A 위원: 게시물만 보고 OSP에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D 위원: 해당 판매자가 불법 기기만 판매하는지도 살펴봐야 함.
- C 위원: 저작권법에 OSP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우리가 시정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OSP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다면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22번은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번 내지 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25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동일한 블로그에 동일 게시자가 게시한 것으로 만화 '☆☆ ☆☆☆ ☆☆☆☆☆'와 '♣♣♣♣♣ ♣♣ ♣♣♣♣♣'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는 '♡♡♡♡♡'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이고, 2022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블로그에 대해서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이전에도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어 현재는 운영자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도 비공개 블로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공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해당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에는 변함없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3번 내지 24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 내지 24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번 내지 27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직접링크 및 인증 번호 등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모두 해외 사이트 또는 저장서비스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통해 프로그램 파일과 정품 인증 패치 또는 크랙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제목 및 본문에서 불법복제물을 배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손쉽게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음. 게시자를 비롯한 공중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근하여 게시물에 제공된 직접링크를 통해 해외 서버에 소재한 불법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일관되게 시정권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링크 제공을 교사하는 심의대상 게시물 또한 저작권 침해 정보성을 인정할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시자는 이를 잘 알면서 게시물의 작성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5번 내지 27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판매중인 사안인지?
- 김선화 선임: 블로그 게시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나, 게시글마다 다수의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광고 수익이 주목적으로 보임.
- E 위원: 해당 블로그는 전체 메뉴를 봤을 때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임. 또 게시물별 다수의 댓글로 보아 저작권 침해 정보의 유통이 심각해 보임.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보임.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 내지 27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번 내지 257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18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임. 2023. 6. 28.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클로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번은 영화 '클로즈'으로, 2023. 5. 3. 극장 개봉하여 현재 OTT서비스를 통해 유료 판매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드라마 '행복배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2번은 드라마 '행복배틀'임. 2023. 6. 15.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 화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28번부터 2,574번까지 총 4,183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웹소설,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

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8번 내지 2,57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1827호~94400호(순번 1번~2574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24.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